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7.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조례의 사용용어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토록하는 규정을 신규 삽입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안 제7조).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1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신설함 (안 제12조).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안 제14조).
-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 조례준칙에 준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인상함.(안 별표).

개 정 전(만원)			개 정 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10	20	10	20	50
30	50	100	100	300	500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라”를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제5호·제6호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로 하고, “재이용하는 ”은 “재사용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목 및 본문·제1호·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며,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감량부산물”을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목 및 본문·제1호·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월말까지” 다음에 “시장에게”를 삽입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0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3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세대이상의”를 “20세대이상의”로 한다.

제12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3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목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삽입한다.

제1조본문·제4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5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8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9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3항·제11조제목 및 제1항·제2항·제3항·제13조제목 및 제1항·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74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전 상 오
	청 소 담 당	곽 기 용
	담 당 자	이 명 수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	20	5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즉 시

신 고 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사업장)	(전화 :)					
사 업 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 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 활 용 장 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 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재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 -----.
2.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3.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 재활용하는 -----.
5. (생 략)	5.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6. (생 략)	6.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생 략)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 ----- -----이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른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 -----.

현행	개정안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 (생략) 2. <u>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삽입) 제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1.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2. <u>음식물류 폐기물 -----</u> ----- ----- ----- ----- <u>시장에게</u> ----- -----. 3. <u>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u> <u>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u> <u>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u>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하는 <u>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u> 대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①(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②----- -----20세대이상의---

현행	개정안
어 <u>음식물쓰레기</u>를 재활용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u>음식물쓰레기</u>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u>음식물쓰레기</u>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생략) ②<u>음식물쓰레기</u>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u>음식물쓰레기</u>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u>음식물쓰레기</u>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u>재활용</u>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u>음식물류 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 ----- -----. ③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제12조(<u>음식물류 폐기물</u>-----)①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②<u>음식물류 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 ----- -----)------ ----- ----- -----<u>음식물류 폐기물</u>----- --- <u>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u> <u>같다.</u> ③ (음식물류 폐기물 명칭변경) <u>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u>

현행	개정안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삽입)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u>음식물쓰레기</u>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 -----)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u>,----- -----<u>음식물류 폐기물</u>-----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 -----, -----, 가. 음식물류 폐기물----- -----, -----, 나. (현행과 같음)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제12조---)), 가. ----- --음식물류 폐기물-----,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변경신고서포함), -음식물류 폐기물----- -----, -----, 3. 음식물류 폐기물 ----- ----- -----((법 제12조 관련)).	10	20	5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10	20	5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지(법제16조 제2항관련)	30	50	100			100	300	500